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19-91
----------	---------

제출연월일 : 2019년 11월 일
제출자 : 강 서 구 청 장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3. 주요내용

보건지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마련(안 제11조)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자치법, 「지역보건법」, 「지역보건법 시행령」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참고

다. 협의사항 : 해당 없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2019.10.16.~11.5.) 결과 : 의견 없음
- 2) 규제 사전심사 결과 : 해당 없음
- 3) 부패영향평가 결과 : 원안 동의
- 4) 성별영향평가 결과 : 해당 없음

서울특별시 강서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

부 칙

이 조례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보건소의 설치)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보건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건소를 둔다.</p>	<p>제11조(보건소 등의 설치) 「지방자치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와 「지역 보건법」 제10조,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제10조에 따라 보건소 및 보건지소를 둔다.</p>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의 발생요인 : 세출예산 순증 및 지역보건법 제24조(비용의 보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보건지소 설치에 필요한 세출의 순증가액 및 보조금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세입	시비	359,100	256,200	256,200	256,200	256,200	1,383,900
	소계(a)	359,100	256,200	256,200	256,200	256,200	1,383,900
세출	시비	359,100	256,200	256,200	256,200	256,200	1,383,900
	구비	236,389	226,082	226,082	226,082	226,082	1,140,717
	소계(b)	595,489	482,282	482,282	482,282	482,282	2,524,617
총 비용(b-a)		236,389	226,082	226,082	226,082	226,082	1,140,717

4. 비용추계의 상세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총 비용	시비	구비	산출근거	비고
총사업비	595,489	359,100	236,389		
시설비	356,400	199,100	157,300	유휴건물(쌍화동 메이빌 아파트 내) 개보수	
인건비	69,089	30,000	39,089	시간선택제임기제 7명*3개월	
운영비	50,000	50,000	0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운영비	전액 시비
기타	120,000	80,000	40,000	의료장비 및 전기차 구매 등	

※ 참고사항

- 보건지소 시범운영 기간 기준(2019.10월~12월) 인건비 및 운영비 산출
- 서울케어 건강돌봄서비스 : 전문인력(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운동사 등)이 팀으로 구성되어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맞춤형 통합 건강돌봄서비스 제공

※ 2020년도 이후 매년 운영비 등 482,332천원(시비 256,250천원, 구비 226,082천원) 예산 소요 예상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구분	1차년도 (2019년)	2차년도 (2020년)	3차년도 (2021년)	4차년도 (2022년)	5차년도 (2023년)	합계
자체수입	236,389	226,082	226,082	226,082	226,082	
의존재원 (시비보조)	359,100	256,250	256,250	256,250	256,250	

6. 작성자 : 행정관리국 행정지원과 과장 김병욱

(담당 : 행정7급 이샘이 / ☎ 2600-6033)

규제 사전심사 검토의견서

□ 자치법규명

-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개정사유

- 보건의료서비스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보건소 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하여 의료서비스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 업무 추진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 주요내용

- 보건소 보건행정과 내에 보건지소 설치(안 제11조)

□ 검토의견

- 동 개정안은 주민 편의와 업무 효율화를 위해 행정조직 상 “보건행정과” 내에 “보건지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 「행정규제기본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규제심사 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함.

부패영향평가 결과통보서

평가번호	2019 - 45				
자치법규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평가담당부서	감사담당관	직급	행정7급	성명	김태환
입안주무부서	행정지원과	통보(조치)일		2019. 10. 31.	
관련조문		검토결과		조치사항	
개정안 전부		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통보 확인서

관리번호	2019A서울강서051			
정책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소관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행정지원과		
	담당자명	이샘이	전화번호	02-2600-6033
담당부서	기관명	서울특별시 강서구		
	부서명	가족정책과		
	담당자명	최은영	전화번호	02-2600-6762
체크리스트 제출일자	2019년 10월 15일			
완료(제외) 통보일자	2019년 10월 24일			

해당 과제는 성별영향평가서 제출 제외 대상에 해당되어 제출된 체크리스트만으로 성별영향평가 절차가 종료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2019년 10월 29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시행 2019. 4. 30] [대통령령 제29715호, 2019. 4. 30, 일부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13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 22.>

1. "지방행정기관"이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설치된 행정기관으로서 그 관할권이 미치는 범위가 일정지역에 한정되는 기관을 말한다.
2. "의회사무기구"란 지방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설치된 의회사무처·의회사무국과 의회사무과 등의 기구를 말한다.
3. "본청"이란 지방자치단체장을 직접 보조하는 기관(의회사무기구·소속기관·합의제행정기관과 하부행정기관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4. "소속기관"이란 직속기관·사업소와 출장소를 말한다.
5. "직속기관"이란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3조에 따른 직속기관으로 지방농촌진흥기구·지방공무원교육훈련기관·자치경찰단·보건환경연구원·보건소·지방소방학교·소방서와 공립의 대학·전문대학을 말한다.
6. "사업소"란 법 제114조에 따른 사업소를 말한다.
7. "출장소"란 법 제115조에 따른 출장소를 말한다.
8. "보조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의 의사 또는 판단의 결정이나 표시를 보조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9. "보좌기관"이란 지방행정기관이 그 기능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그 기관장이나 보조기관을 보좌함으로써 행정기관의 목적달성에 공헌하는 기관을 말한다.
10. "합의제행정기관"이란 법 제116조에 따른 합의제행정기관을 말한다.

제5조(기구의 설치시 고려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구를 설치하거나 개편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기구의 목적과 기능의 명확성·독자성·계속성
2. 기구가 수행하여야 할 사무 또는 사업의 성질과 양에 따른 규모의 적정성
3. 규모와 기능이 유사한 다른 기관과의 균형성
4. 주민편의, 행정능률 등을 고려한 효율성
5. 통솔범위, 기능의 중복유무 등 기구의 능률성
6. 사무의 위탁가능성

②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이 가능한 사무나 지방공사·지방공단·지방자치단체조합이나 행정협의회 등의 설립을 통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무에 대하여는 기구를 설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0조에 따라 설치되는 자문기관에는 상설의 사무처나 사무국·과·담당관을 둘 수 없다.

제19조(보건환경연구원 등) ① 시·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그 하부조직으로 부와 과(科)를 둘 수 있다.

② 보건환경연구원의 원장과 부장·과장(科長)은 지방보건연구원·지방환경연구원이나 지방수의연

구관으로 임명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직위에 보직되는 계급에 상당하는 지방수의 직렬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③ 「지역보건법」 제16조에 따라 임용하는 보건소장은 4급이나 5급의 일반직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한다. <개정 2015. 11. 18.>

부칙 <제29715호, 2019. 4. 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감사결과의 공개에 관한 적용례) 제34조제5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감사를 실시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지방자치법

[시행 2017. 7. 26] [법률 제14839호, 2017. 7. 26, 타법개정]

행정안전부(자치분권제도과) 044-205-3307

제3절 소속 행정기관

제113조(직속기관)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 사무의 범위 안에서 필요하면 대통령령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자치경찰기관(제주특별자치도에 한한다), 소방기관, 교육훈련기관, 보건진료기관, 시험연구기관 및 중소기업지도기관 등을 직속기관으로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4839호, 2017. 7. 26.> (정부조직법)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전단, 같은 조 제5항 전단, 같은 조 제6항·제8항·제9항, 제4조의2제1항 본문, 제5조제2항, 제28조, 제97조 본문, 제100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2항 후단, 제110조제3항 전단, 제112조제3항, 제133조제2항 본문, 제134조제2항, 제148조제1항 본문,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같은 조 제5항 후단, 같은 조 제6항·제7항, 제14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51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4항, 제152조제1항 후단, 같은 조 제3항, 제156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57조제2항, 제159조제1항 본문·단서, 제163조제1항 본문·단서, 같은 조 제2항, 제165조제3항·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168조제3항제1호, 제171조제1항 전단, 같은 조 제2항, 제171조의2제1항,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및 제172조제8항 중 "행정자치부장관"을 각각 "행정안전부장관"으로 한다.

제149조제1항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01>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지역보건법

[시행 2019. 7. 16] [법률 제16262호, 2019. 1. 15, 일부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3장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

제10조(보건소의 설치) ① 지역주민의 건강을 증진하고 질병을 예방·관리하기 위하여 시·군·구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보건의료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설치한다.

② 동일한 시·군·구에 2개 이상의 보건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를 총괄하는 보건소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① 보건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서 다음 각 호의 기능 및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6. 2. 3., 2019. 1. 15.>

1. 건강 친화적인 지역사회 여건의 조성
 2.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
 3.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
 4.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관리를 위한 다음 각 목의 지역보건의료서비스의 제공
 - 가. 국민건강증진·구강건강·영양관리사업 및 보건교육
 - 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
 - 다. 모성과 영유아의 건강유지·증진
 - 라. 여성·노인·장애인 등 보건의료 취약계층의 건강유지·증진
 - 마. 정신건강증진 및 생명존중에 관한 사항
 - 바.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의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 사.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 및 건강관리사업
- ② 제1항에 따른 보건소 기능 및 업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보건지소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보건소의 지소(이하 "보건지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부칙 <제16262호, 2019. 1. 15.>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시행 2018. 12. 20] [대통령령 제29383호, 2018. 12. 18, 타법개정]

보건복지부(건강정책과) 044-202-2805

제8조(보건소의 설치) ① 법 제10조에 따른 보건소는 시·군·구별로 1개씩 설치한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건소를 추가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른다. 이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은 보건복지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

제9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의 세부 사항)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지역보건의료정책의 기획, 조사·연구 및 평가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보건의료계획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중장기 계획 및 실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보건의료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에 관한 사항
3. 보건에 관한 실험 또는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 및 「보건의료기본법」 제3조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등에 대한 지도·관리·육성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지도·관리의 세부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12. 18.>

1. 의료인 및 의료기관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2. 의료기사·보건의료정보관리사 및 안경사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3.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
4.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공중보건 의사, 보건진료 전담공무원 및 보건진료소에 대한 지도 등에 관한 사항
5. 약사에 관한 사항과 마약·향정신성의약품의 관리에 관한 사항
6. 공중위생 및 식품위생에 관한 사항

제10조(보건지소의 설치) 법 제13조에 따른 보건지소는 읍·면(보건소가 설치된 읍·면은 제외한다)마다 1개씩 설치할 수 있다. 다만, 지역주민의 보건의료를 위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역에 보건지소를 설치·운영하거나 여러 개의 보건지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부칙 <제29383호, 2018. 12. 18.>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12월 2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지역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의무기록사"를 "보건의료정보관리사"로 한다.